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단기근속자 비율 등에 따른 고용보험료 추가 부담 〉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1989호)

2024. 9.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손을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단기근속자 비율 등에 따른 고용보험료 추가 부담	2

I. 제안경위

2024년 7월 19일 정부가 제출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7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6월 30일 현재 고용보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으로서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 이직한 단기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넘는 사업의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다음 보험연도의 해당 사업에 대한 실업급여 보험료는 직전 보험연도의 해당 사업에 대한 실업급여 보험료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증액한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기 일자리의 확산을 방지하고 고용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단기근속자 비율 등에 따른 고용보험료 추가 부담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①3년간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의 비율과 ②3년간 해당 사업에 대하여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된 구직급여 금액의 비율이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실업급여 보험료를 최대 40%까지 증액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안 제13조의2제1항 신설),

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 등은 위 규정에 따른 단기 근속자 비율 등의 산정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2항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3조의2(실업급여 보험료의 특례) ① 매년 6월 30일 현재 고용보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으로서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 다음 각 호의 비율이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넘는 사업의 경우 사업주가 제13조제4

항(제48조의2제8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다음 보험연도의 해당 사업에 대한 실업급여 보험료는 직전 보험연도의 해당 사업에 대한 실업급여 보험료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증액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제2항(같은 법 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수급자격자”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미만으로 근로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사람의 비율

2. 해당 사업에 대하여 부과된 실업급여의 보험료에 대한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된 구직급여 금액의 비율

② 제1항 각 호의 비율을 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대상에 포함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u>1. 일용근로자</u> <u>2.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예술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u> <u>3.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u> <u>4.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노무제공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u> <u>5.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u> <u>6.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이직사유 또는 노무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u>
--	--

나. 검토의견

고용노동부는 2021년 9월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국회에 보고하였는데(2021.9.3.), 여기에는 단기근속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주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음.

이는 사업주가 일감 감소 시 유급휴업 또는 휴가 부여를 회피하기

위해 단기계약을 지속하여 구직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게 하거나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휴직을 부여하는 대신 재고용을 전제로 계약을 종료하여 구직급여를 받게 하는 등의 구직급여 제도를 이용한 단기 일자리 계약 체결 관행을 방지하고, 구직급여 반복수급을 줄여 고용보험기금 재정을 건전화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음.

개정안은 3년 동안 ①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미만으로 근로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사람의 비율 및 ②해당 사업에 대하여 부과된 실업급여의 보험료에 대한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된 구직급여의 비율이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넘는 사업의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다음 보험연도의 실업급여 보험료를 직전 보험연도의 실업급여 보험료의 4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증액한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하되(안 제13조의2제1항),

그 비율을 산정할 때 (1) 일용근로자, (2) 「고용보험법」 제77조의2 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예술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단기예술인, (4)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노무제공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5) 단기노무제공자, (6)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이직사유 또는 노무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포함하지 아니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2항).

2019.부터 2024. 7. 동안의 구직급여 반복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구

직급여를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이 2023년 기준 110,000명에 이르고 전체 수급자(167.2만명)의 6.6%에 달하는바 개정안처럼 단기 근속자 비율 등이 높은 사업에 대하여 실업급여 보험료를 더 많이 부과함으로써 구직급여 반복 수급행태를 다소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다고 봄.

<표> 구직급여 반복수급 현황

(단위: 천명, %)

연도	전체	1회	2회	3회 이상			
				소계	3회	4회	5회 이상
2019	1,443	1,075(74.5)	282(19.6)	86(5.9)	58(4.0)	15(1.0)	13(0.9)
2020	1,703	1,283(75.3)	327(19.2)	93(5.5)	65(3.8)	16(0.9)	13(0.7)
2021	1,774	1,329(74.9)	345(19.4)	100(5.7)	71(4.0)	17(0.9)	13(0.7)
2022	1,631	1,194(73.2)	334(20.5)	102(6.3)	72(4.4)	17(1.1)	13(0.8)
2023	1,672	1,197(71.6)	364(21.8)	110(6.6)	78(4.7)	18(1.1)	14(0.8)
2024. 7.	1,261	904(71.7)	276(21.9)	81(6.4)	59(4.6)	13(1.0)	10(0.8)

※ 1) 괄호 안 수치는 전체 대비 비율을 의미함

2) 자료: 고용노동부

다만, 개정안은 보험료 추가 부담 여부의 기준이 되는 비율(제13조의 2제1항제1호 및 제2호)을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보험료 추가 부담은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되는 조치이므로 법률에 대강의 기준을 규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한지,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문 의 처
02)6788-5538